

# 예산총칙

201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85,938,095	8,578,143
일반회계	256,824,697	7,704,741
특별회계	29,113,398	873,402
기타특별회계	29,113,398	873,40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55,147	13,654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770,757	53,123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990,465	29,714
주차장특별회계	9,616,912	288,507
기반시설 특별회계	11,172	335
재정비축진 특별회계	16,268,945	488,06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85,95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금번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의존재원(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과 상급기관 공문에 의한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